

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<input type="checkbox"/> 측 정 기 기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수배출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질오염방지시설	개선계획서	처리기간
제 호			4일 (검사기간 제외)
사 업 자	① 사업장명		
	② 대 표 자		
	③ 주 소	(전화번호:)	
④ 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		
⑤ 사업종류		⑥ 주생산물	
⑦ 측정기기·폐수배출시설·수질 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(예정)일		⑧ 개선계획서 제출사유	
⑨ 개선완료·가동중단·위탁처리 (예정)일		⑩ 개선(가동중단 ·위탁)기간	
⑪ 부적정 운영명세	측정기기 및 시설명	규격	수량
⑫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	항목		
	농도		
⑬ 폐수위탁처리	위탁처리방법	위탁업체명	위탁처리량 m ³ /일
⑭ 예상평균 폐수배출량	m ³ /일	⑮ 일일 가동 예상시간:	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·수질오염
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※ 구비서류: 자체개선계획서 1부	수수료
	없 음

※ 작성요령

1. 폐수배출시설·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개선·변경 또는 보수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2. 공법 등의 개선으로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※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